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지방세 체납정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 이종욱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8187호)

2026. 8.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장지원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지방세 체납정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이종욱의원 등 13인
2. 제안연월일 : 2026. 4. 8.
3. 회부연월일 : 2026. 4. 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세 징수 절차 및 체납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나, 체납정보를 관리 또는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에 관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음.

그런데 최근 지방세 체납 증가로 지방재정 압박이 심화되고 있고, 현재의 지방세 체납 징수 방식은 인력 중심의 수작업, 사후적·획일적 대응, 체납자 선별 기술 부족 등의 한계를 가지고 있어 인공지능(AI) 및 빅데이터 기반의 지능형 지방세 행정 도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이에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세 체납 정보의 관리 및 징수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지방세 체납정보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체납자의 납부 이력, 재산 정보 등을 분석하여 체납 유형 관리 및 유형별 체납 징수 정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납세자의 개인정보와 사생활 보호를 위한 조치를 의무화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조세 행정의 효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5 신설).

Ⅲ. 검토의견

1. 지방세 체납정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개정안은 지방세 체납정보 관리를 위한 지방세 체납정보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5 신설).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11조의5(지방세 체납정보 통합관리)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세 체납 정보의 관리 및 징수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지방세 체납정보 통합관리시스템(이하 “통합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통합관리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체납자의 납부 이력, 소득·재산 정보 등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체납 유형 분석·관리 및 유형별 체납 징수 정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과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자의 개인정보 보호와 사생활의 자유 및 비밀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현 행	개 정 안
	④ <u>통합관리시스템의 자료 또는 정보를 취득·관리·이용한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자료·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u> ⑤ <u>그 밖에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법에 지방세 징수 절차 및 체납절차가 규정되어 있으나, 체납정보를 관리 또는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에 관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음. 이에 개정안은 지방세 체납 정보의 관리 및 효율적인 징수를 위하여 지방세 체납정보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근거 마련하려는 것임.

개정안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체납자의 납부 이력, 재산정보 등의 분석을 통해 체납 유형 관리 및 유형별 체납징수 등의 정책 수립에 기여하고, 납세자의 개인정보와 사생활 보호를 위한 조치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이해됨.

참고로, 국회 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에 의하면, 개정안에 따른 지방세 체납정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에 소요되는 추가 재정소요는 2027년 11.1억원, 2031년 1.1억원 등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14.4억원(연평균 2.9억원)으로 추계됨.

[개정안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억원)

구 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연평균
지방세 체납정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안 제11조의5 신설)	11.1	-	1.1	1.1	1.1	14.4	2.9

주: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 발생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다만, 현재 「지방세기본법」 제 135조1)에 따라 지방세통합정보통신

1) 「지방세기본법」

제135조(지방세 업무의 정보화)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조합장은 지방세 업무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규정된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24조제2항에 따른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세 관련 정보의 효율적 관리와 전자신고, 전자납부, 전자송달 등 납세편의를 위하여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을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 제129조에 따라 받은 과세자료 및 제130조에 따라 수집한 자료의 제공(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공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및 관리
- 제86조제1항제5호에 따라 제공받은 과세정보의 제공.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공할 수 있다.
 - 국가기관이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요구하는 경우
 - 국가데이터처장이 국가통계작성 목적으로 요구하는 경우
 -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회보험의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 관련 법률에 따른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요구하는 경우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급부·지원 등을 위한 자격심사를 위하여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요구하는 경우
 -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다른 법률에 따른 요구가 있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조합장이 필요로 하는 지방세 부과·징수, 조세의 불복·쟁송, 범칙사건조사·세무조사·질문·검사, 체납확인, 체납처분 및 지방세 정책의 수립·평가·연구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 제14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지방세 통계자료 등의 관리
- 전자신고, 전자납부, 전자송달 등 납세편의를 위한 서비스 제공

망(이하 ‘지방세정보시스템’)이 구축되어 운영중에 있는데, 동 시스템에서는 과세자료²⁾를 토대로 「지방세징수법」을 포함한 지방세 관계법령에 따라 체납징수 업무를 수행하고 납세자 개인정보 등 보호 조치를 이행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행정안전부의 설명에 따르면, 동 시스템을 통해 체납자의 지방세 납부이력, 재산정보 등의 분석을 통해 납부 가능성을 예측하는 체납회수 모형을 개발하여 지방세 체납징수 업무에 활용 중에 있음.

또한, 현행 지방세정보시스템 운영시에도 「지방세기본법」 제86조(비밀유지)³⁾ 및 제108조의2(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에 따라

6. 그 밖에 납세자의 편의를 위한 서비스 제공

2) 과세자료 제출기관: 「지방세기본법」 제127조에 따른 중앙관서, 지방정부,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 등

3) 「지방세기본법」

제86조(비밀유지) 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지방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 10. (생략)

② 제1항제1호·제2호·제4호(제135조제2항에 따라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호부터 제10호까지의 경우에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조합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1. ~ 3. (생략)

③ 세무공무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과세정보 제공을 요구받으면 거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단서에 따라 과세정보를 알게 된 자(이 항 단서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과세정보를 제공받아 알게 된 자를 포함한다)는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사용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이 제1항제5호에 따라 알게 된 과세정보를 제135조제2항에 따라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세무공무원(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을 포함한다)은 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지방세 정책의 수립·평가·연구를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이용하려는 자가 과세정보의 일부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개별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직접적 또는 간접적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상태로 가공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⑥ 이 조에 따라 과세정보를 제공받아 알게 된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⑦ 제1항 단서에 따라 과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과세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의 구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납세자 개인정보 보호와 사생활 자유 및 비밀 보장을 위한 조치가 이미 시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실익은 크지 않을 수 있음.

따라서,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재 운용되고 있는 ‘지방세정보시스템’과 별도의 ‘지방세 체납정보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는지 판단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현재 운용되고 있는 ‘지방세정보시스템’을 통해 지방세 체납관련 정보를 관리하고 있으며, 동 시스템 운영시 납세자 개인정보 보호조치 및 비밀유지 조치가 시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입법 필요성은 높지 않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333